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19. 7. 황인창 연구위원

요 약

2019년 6월 27일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함. 지나친 보험 자본규제 강화는 금융시장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특히 국내 금융시장 및 보험회사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과기간 설정, 필요 시 시행 초기 RBC와 K-ICS의 병행 등 K-ICS 연착륙 방안을 제시함

이번 발표로 K-ICS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자본규제 선진화와 더불어 **보험상품의 구조 변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함

보험회사는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과는 별개로 위험관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더욱 강화하여 금리 위험에 취약한 사업모형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향후 금리 하락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연착륙 방안만으로는 K-ICS 도입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주요 내용

- (추진원칙) IFRS17 시행시기('22년 예정)에 맞춰 K-ICS 도입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글로벌 규제 개편 차이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및 보험회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
- (추진방안) ①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를 참고하여 K-ICS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 ② **충분한 경과기간 설정**, ③ 필요 시 시행 초기 RBC와 K-ICS의 병행 운영, ④ 보험회사 자구노력 강화 유도, ⑤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장 형성 방안 강구
- (추진일정) '19년 하반기(K-ICS 2.0), '20년 상반기(K-ICS 3.0) 등 **계량영향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여 자본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

2. 평가

- (수용성 제고) K-ICS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18년에 실시한 계량영향평가(K-ICS 1.0)는 국내 보험회사의 신제도 수용능력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줌
 - 현재 금리 환경도 제도 선진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최악의 금리 시나리오까지 상정한 보다 보수적인 도입 플랜까지 고려할 필요
- (산업정책) 자본규제 선진화와 더불어 보험상품의 구조 변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함
 - 신제도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투자구성은 변화하고 있으나, 시장경쟁·수익성 등의 이유로 상품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예를 들어, 장기채권 편입 비중 증가로 보험회사 자산 듀레이션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임
 - 현재와 같이 다양한 보증을 포함한 보험상품 판매 환경이 변하지 않고서는 K-ICS 도입에 따른 충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산업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는 보험회사가 이자마진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2015)에서 추진된 보험상품 자유화 조치 등이 시장에 정착되어 보험마진만으로 생존에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보험회사 대응방안

- (위험관리)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과는 별개로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환경으로 금리 위험에 취약한 사업모형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금리 상승보다 하락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연착륙 방안만으로는 K-ICS 도입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상품개발) 상품개발 시 보증(특히 금리 보증)은 제공하지 않거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고, 보증 이외에 상품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 보험 자본건전성제도 현황 및 변화

2019. 6.

보험연구원

1. 보험 자본건전성제도 개요

■ **(준비금과 자본)** 보험금 지급 원천은 책임준비금(보험부채)과 자본이므로 준비금 및 자본의 충분성(Adequacy) 여부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 평가됨

○ **(지급능력)** 보험회사는 **예상 손실에 대응한 준비금**을 적립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실(위험)에 대응한 가용자본(지급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평가됨

○ **(지급여력)** 따라서 **준비금의 충분성을 전제로** 지급여력비율(= 가용자본 / 위험)이 100% 이상이면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이 있다고 평가됨

○ **(이익 원천)** 보험회사 이익의 주된 원천은 보험마진과 이자마진으로 위험, 즉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자본을 형성하게 됨

- 보험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예상 손실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받아 준비금 적립 재원을 마련하고 실제 손실과의 차이만큼 **보험마진**을 얻게 됨
- 또한 보험회사는 준비금 상당 자산과 보험금 지급 간 시차를 이용한 자산운용을 통해 준비금 적립이율과의 차이만큼 **이자마진**을 얻게 됨

■ **(보험부채평가)** 보험회사 준비금의 충분성 평가는 원가(Cost)기준에서 시가(Current Value)*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수성)** 주요국 금융당국은 예상 손실 **추정 가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원가조정(Higher of Cost or Current Value)****을 통한 준비금 적립을 보험회사에 요구해왔음

* Current Value는 Market Value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준비금 증감을 모두 허용하며 가정 갱신 측면에서 원가조정과 유사하나, 원가조정은 준비금 증가만 허용함

** 국내 보험시장의 현행 부채적정성평가(LAT)도 원가조정에 해당함

○ **(보험료와 자본)** 1990년대에 들어와 선진 보험시장은 **보험상품 설계 및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자본규제는 위험기준 강화**로 변화함

- 예상 손실 추정에 기초한 보험료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자율을 인정하되, 준비금 적립에 대한 보수적인 감독회계를 적용함

○ **(시장일관성)** 2000년 이후 **시장의 평가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가정을 갱신하는 **준비금 시가평가**가 지급여력평가에 도입되기 시작함

-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불일치를 해소하여 지급여력평가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자본의 과대평가 가능성을 축소함
- 손실 추정에서 경제 실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감독회계가 변화됨

2. 주요국 보험 자본건전성제도 현황

- **(주요국 선정)** 주요국 보험 자본건전성제도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보험시장 크기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8개국/지역을 선정함([부록] 참조)
 - EU, 캐나다, 호주, 홍콩, 대만
 - EU: 지급여력평가에 시가평가 감독회계 도입
 - 캐나다 등: International GAAP(IFRS 17) 채택 및 지급여력평가에 반영 계획
 - 미국, 일본, 중국
 - IFRS 미적용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원가기준 감독회계를 유지함

- **(평가기준)** 보험회사 자산 및 부채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자산은 시가평가 중심으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부채는 국가 간 큰 차이가 존재함
 - 자산평가는 IFRS 또는 자국 GAAP 기준에 따라 시가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자산은 원가로 표시함
 - 부채평가는 크게 원가기준(미국, 일본, 대만)과 시가기준(EU, 캐나다, 호주, 중국 등)으로 나뉘고, 각 국가 간 상당한 차이를 보임
 - 부채를 원가로 표시하는 경우, 미래 준비금 부족이나 자산 및 부채의 가치 변동에 대비하여 다양한 준비금 제도가 병행 시행되고 있음

- **(가용자본)** 가용자본은 손실 흡수 정도에 따라 2~3단계로 계층화함

- **(요구자본)** 일반적으로 요구자본은 미리 정해진 신뢰수준 하에서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국가별로 상이함
 - 요구자본을 신뢰수준 하에서 결정하는 국가의 경우, 주로 99.5% 1년 VaR 또는 99% 1년 TVaR(CTE)를 사용함
 - 일본에서는 위험유형별로 상이한 신뢰수준을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신뢰수준을 명시하지 않음

3. 주요국 보험 자본건전성제도 변화

- (기술발전 및 그룹경영) 보험회사의 기술발전 및 그룹중심 경영에 따라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의 모든 위험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험상품 개발, 위험관리기법 등이 발전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보험 자본건전성제도도 복잡해지고 있음
 - 보험 자본건전성제도는 국가별 특성이 두드러지나, 국가간·업권간 일관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논의(예, IAIS ICS)가 활발해짐
- (변화 방향) 주요국은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를 위한 부채평가 측면에서 시가평가를 도입하였거나 향후 시행평가로 이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시가평가는 평가 시점마다 손실 추정 가정을 매기 갱신함에 따라 보험회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자본의 위험 민감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음
- (국가별 상이) 기존의 자본건전성제도와 시장 환경 등이 서로 달라 각국의 지급여력평가의 세부 변화에도 차이가 있음
 - EU는 시가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반면, 미국은 신계약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건전성제도를 개선함
 - 시가평가 도입에서도 부채평가 할인율 산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할인율로 무위험수익률에 부채비율동성 반영하는 유형(EU, 호주, 홍콩, 대만)과 채투자수익률 반영(캐나다), 과거 평균 금리 활용(중국) 형태가 존재함
- (보완조치) 주요국들은 자본건전성제도 변화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조치를 채택**하고 있음
 - 각국은 자본건전성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과도한 비용 발생에 인한 **시장 효율성 저해**, 지급여력비율 급락에 인한 **시장 불안 초래**, 보험회사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 약화** 등을 우려함
 -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편법을 허용하거나(EU), 시가평가가 필요한 계약에 대해서만 평가하는(미국) 등 **비례성원칙(Proportionality)** 적용 논의가 활발함
 - 지급여력비율 급락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활용**하거나(EU, 호주, 캐나다), 부채평가 할인율에 **장기금리 도입·무위험수익률에 금리 가산** 등을 활용함(EU, 호주, 홍콩, 대만 등)
 - 보험회사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평가 할인율에 채투자수익률을 반영**하거나(캐나다), 장기 위험투자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을 조정**함(EU)

〈부록〉 주요국 보험 자본건전성제도 요약

		EU	캐나다	호주	홍콩	대만	미국	일본	중국
감독당국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y	OSFI	APRA	IA	FSC	Insurance Commissioners, Federal Reserve	FSA	CIRC
규제 체계	제도	Solvency II	LICAT/MCT	LAGIC	Regulatory Requirements	RBC	RBC	RBC	C-ROSS
	구조	3 pillars	3 pillars	3 pillars	-	-	-	-	3 pillars
	유형	위험 기준	위험 기준	위험 기준	규정 기준	위험 기준	위험 기준	위험 기준	위험 기준
위험 측정	신뢰수준 및 기간	99.5%, 1년	99%, 1년	99.5%, 1년	N/A	95%, 1년	N/A	위험유형별 상이, 1년	99.5%, 1년
	측정방식	VaR	TVaR (CTE)	VaR	N/A	VaR	다양함	VaR	VaR
	내부모형	허용	부분 허용	허용	N/A	N/A	부분 허용	부분 허용	N/A
평가 기준	자산	시가평가 (모든 자산)	시가평가 (IFRS)	시가평가 (IFRS)	시가평가 (IFRS)	시가평가 (IFRS)	시가평가 (US SAP)	시가평가 (J-GAAP)	시가평가 (C-GAAP)
	부채	시가평가	시가평가	시가평가	시가평가	원가평가 (적정성 평가)	원가평가 (적정성 평가)	원가평가 (적정성 평가)	시가평가
IFRS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외국기업만 허용	자발적 허용	미적용
개선계획		Solvency II Review* (2021)	IFRS 17과 일관성 검토	IFRS 17과 일관성 검토	시가평가 기준 지급여력제도 도입 추진(2022)	시가평가 기준 지급여력제도 도입 추진	원칙중심준비금 (PBR) 의무적용 (2020)	시가평가 기준 지급여력제도 도입 추진	-

주 *: IFRS 17 도입과 별개